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

## [분관 한내어르신복지센터]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# 1. 제안이유

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# 2. 추진근거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3. 위탁개요

가. 시설 및 수탁 현황

시설명	시설규모 (연면적)	소재지	시설장	설립일	수탁법인	위탁기간
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 (분관)	지하2층 지상3층 (2,213㎡)	독산로72길 86-5	조영표	2011.09.23	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(대표:이용달)	2018.1.1.~ 2022.12.31. (5년)
금천한내 어르신복지센터 (분관)	지하1층 지상5층 (2,003㎡)	한내로 69-15		2013.03.05		

나. 주요 재계약 내용

- 1) 위탁기간 : 2023.01.01. ~ 2027.12.31.(5년)
- 2) 위탁업무
  -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및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운영
  - 병설 데이케어센터(주야간 보호시설) 2개소 운영

- 경로식당 운영, 청사관리 등
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
다.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 여부 결정  
(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)

라. 추진일정

- 1) 2022. 9. : 구의회 상임위 안전 보고
- 2) 2022. 10.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3) 2022. 11. : 수탁기관 공고
- 4) 2022. 12. : 재계약 체결

#### 4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

가.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

나.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책임감 있는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

다. 민간위탁사무 자체 성과평과 결과 : 양호(평가점수 91.5점)

※ 2021년 서울시 노인복지관 평가시 충실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

#### 5. 관계법령

가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재4조의3, 제9조

# 관계법령

#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**제9조(계약의 체결 등)**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7.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
8. 예산지원 내용
9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.